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 토론문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1. 정보인권 국내 현황

-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등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정보 사회의 발달에 따른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기본권 조항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Internet Governance Forum 등 국제사회에서 정보화의 발전과 규제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정보화 선진국으로의 IT의 기술발달과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메시지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인권과 관련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추진해 왔음

2. 정보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현황

정보인권 관련 진정·민원·상담·안내는 2001년 31건 이후 2012년말 6,386건으로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최근 7년간 민원현황도 2006년 2,716건에서 2008년 3,849건, 2010년 5,142건, 2012년 6,8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비하여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유형별로는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처리가 31,749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로는 2001년에 31건, 2002년 315건, 2004년 1,518건, 2006년 1,695건, 2008년 3,261건, 2010년 4,357건, 2012년 5,559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30%이상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비하여 3.7배, 2006년에 비하여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CCTV 관련한 민원현황은 전체 6,120건으로, 진정 1,485건, 상담 3,010건, 민원 1,434건, 안내 19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8>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민원 현황

2012.12.31. 기준 (건)

연도	진정	상담	민원	안내	합계
2001	19	10	1	0	30
2002	114	196	5	0	315
2003	131	445	70	258	904
2004	195	521	273	529	1,518
2005	337	791	869	668	2,665
2006	235	655	637	805	2,332
2007	449	680	829	761	2,719
2008	518	953	823	967	3,261
2009	628	1,096	915	945	3,584
2010	823	1,442	1,167	925	4,357
2011	567	1,416	1,469	783	4,235
2012	687	1,900	2,521	451	5,559
합계	4,703	10,105	9,579	7,092	31,479
비율	14.9	32.1	30.4	22.5	100.0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정보인권과 관련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은 60여 건에 이르며, 정부와 정보통신기업과 관련한 정보인권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정책진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3. 차기정부 개인정보 정책 방향 관련 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음
-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으로 업무와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예산과 인력낭비가 심각함
- 또한 동일사안에 대하여 부처마다 해석이 다르고, 상호 견제로 책임감 있는 정책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와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심의·의결 기능만 존재하고 조사권도 결여되어 있어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함

4. 광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연례컨퍼런스(ICDPC)는 2011년 주요 논의 주제가 빅데이터와 잊혀질 권리였으며, 2012년에는 온라인 광고 마케팅과 규제 프레임이 주제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개인에 대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특수 상황에서 타겟마케팅의 용이함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OPT-IN , OPT-OUT 논의를 포함하여 시스템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원칙을 현대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
 -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 통합·연동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Privacy by Default,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잊혀질 권리 등 도입
- 빅데이터는 정부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IT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포기라는 커다란 희생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정책과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의 조화가 필요함

(2) SNS의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공유 기준의 마련
 - 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개로 설정해 놓는 행위 금지
 -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온라인 추적을 차단할 수 있는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제공 의무화
- 미국, EU 등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미 추적차단기능(Do-Not-Track) 제도화

[별첨]

1.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고 사항

제1기 (A/HRC/8/40)	제2기 (A/HRC/22/10)
<p>16. 캐나다는 한국정부가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p> <p>16. Canada also recommend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review it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right to privacy.</p>	<p>124.39.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p> <p>124.39. Enhance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iring more female police inspectors, improving shelter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victims and strengthening data protection in this regard (Hungary);</p>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권고안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고사항

(1) 제1기(2007~2011) 권고 내용 및 이행 평가

제1기 NAP 권고 내용	제1기 NAP 이행 평가
<p>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조항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유사 관련 법령을 정비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항목 증가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법률 소송 및 분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지속적 개정 노력이 필요함
<p>2. 독립된 개인정보 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하여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

<p>호 전문기구 설립</p>	<p>원회가 2011년 9월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 보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조직상·예산상의 독립성 강화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시 의견표명하였으나 일부만 수용됨
<p>3.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화 및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평가됨
<p>4.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주민등록제도 개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i-Pin 보급률은 20%도 안될 뿐만 아니라 I-Pin 발급도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하여 발급되므로 실질적인 대안될 수 없음 • 포털사이트의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민간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더욱 남용할 가능성도 있음
<p>5. CCTV 설치 기준 및 주무기관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설치 근거 법제 마련 권고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관련 규정을 설치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민간부문 CCTV를 포함한 설치 및 운영기준 등이 마련되었음 • 또한 CCTV는 학자들간에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 욕구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범죄예방과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 하지만 CCTV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노동 감시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음성녹음을 사용하거나, 목욕장 등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제2기(2012~2016) 국가정책 방향 및 권고 내용

① 목표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제공·유통과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촉진함으로써 정보인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함

② 국가정책방향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경제성·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이용·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함

③ 핵심 추진과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신규)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 개선(신규)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신규)

3. 제12차 ASEM(Asia-Europe Meeting) 인권 세미나 회원국 권고사항 중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 관련 사항

제12차 ASEM 세미나 회원국 권고사항(프라이버시 부분)	
<p>4. 인권 보장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포함되는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의 개념에 대한 공통되고 일관적인 국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알 권리, 동의할 권리,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정보의 완결성과 보안성을 포함하는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사생활 보호 법률의 취합과 조율은 투명성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p>	<p>There is a need for a common, coherent an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privacy and data protection that is fully respectful of human rights guarantees. Common principles o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should apply, such as the right to know, to consent, to access one's own data and to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data. The collection and coordination of privacy legislation, especially in the Asian region, would benefit transparency and cooperation.</p>

<p>5. 아직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법률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들은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과 더불어 ICT 거래, 전자상거래 및 전반적인 ICT 업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 법률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유럽평의회 협약 (No. 108)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p>	<p>States not yet having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aws should adopt them – for reason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s well as for reasons of legal security and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in ICTs, e-commerce, and the general vitality of the ICT sector. Notably, States should consider the opportunity to join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No. 108) on Data Protection, which is open globally.</p>
<p>6. 검색 엔진이나 소셜네트워크 제공업체와 같은 인터넷 게이트키퍼(Internet gatekeeper)들의 경우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한 수입을 위하여 더욱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수요로부터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 인터넷 중개업체 및 일반 기업들 모두를 위해 - 제공할 책임이 있다. 자기규제는 충분하지 않다. 설계를 통한 사생활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강화 기술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인의 인권위반에 대한 해결책이 단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유효하여야 한다.</p>	<p>Internet gatekeepers, such as search engines and social network providers, are increasingly harvesting user data in order to monetize their services.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 both for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ompanies more generally – a regulatory framework under which the rights of individuals are protected from the profit-driven data demands from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 is not sufficient. Privacy by design and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should be promoted. Remedies of individual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must not only exist de jure but also need to be effective.</p>
<p>7. 다양한 규제 단계에 있어 효율적인 해결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들 해결책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독립적인 정보보호당국 및/또는 옴부즈맨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자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업 부문은 러기(Ruggie)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원칙을 이행하여야 한다.</p>	<p>Effective remedies need to be provided on the various levels of regulation and people to be made aware of them. In particular, States should create independent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or ombudsman institutions. Data protection officers should be installed in private companies handling large amounts of data. The corporate sector should agree to binding CSR principles, as contained in the Ruggie framework (protect, respect and remedy).</p>

4. 차기정부 인권 12개 과제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시 사항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개인 정보 관련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 ②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재정립(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간 통합·연동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 ③ 개인정보의 감시 및 마케팅 이용 등 목적외 이용 개선

5. 정보인권 보고서 제언에 담긴 정보프라이버시권 관련 국가정책 방향

-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의 통일
- ②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개편
- ③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있어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④ 강력범죄 피의자의 가족, 친지 등 사생활 보호장치 마련
- ⑤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의 개선
- ⑥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보장장치 마련
- ⑦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 재정비
- ⑧ 바이오 정보의 수집·처리원칙 마련 및 오남용 방지
- ⑨ 인터넷 패킷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제한 및 기준·절차 등 마련
- ⑩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재정립
- ⑪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